



제329회 임시회

2014.04.1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 광 회 의원 외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4년 03월 31일

○ 회부일자 : 2014년 04월 02일

3. 제안이유

학교숲 조성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라. 자연성 확보와 교육적 기능 강화 등의 학교숲 조성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학교숲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심의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조성과 지역사회 친환경 녹색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 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추진경과

▶ 교육위원회 연구용역과제 수행

【충청북도 학교숲 활성화 방안연구 (2013. 6. 1.~2013. 9. 31.)】

▶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2013. 11. 6.)

▶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조례제정 관련 협의 및 도교육청 조례안 검토(2014. 2월)

▶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공청회 실시(2014. 3. 13.)

▶ 입법예고 (2014. 3. 20. ~ 2014. 3. 30.) : 제출된 의견 없음

▶ 도교육청, 의회 입법팀 검토(2014. 3. 20. ~ 3. 27.)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 ‘학교숲’과 ‘학교숲 조성’ 및 ‘학교숲 관리’에 대한 정의와 제3조의‘적용범위’ 명시는 본 조례안의 학교숲 의미와 학교숲의 특성, 적용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숲 조성과 관리 행정의 명료화와 실효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4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사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책무성 강화와 학교숲 사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제5조 학교숲 조성 기준으로 자연성 확보, 기능성 실현, 접근성 확대, 교육성 강화, 질량성 제고를 규정한 것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인성교육 강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사료되며,
 - 제6조 학교숲 관리 사항으로 수목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수목 처분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숲 관리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와 학교 현장에서 학교숲 보호 및 유지·관리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체계적인 학교숲 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제7조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도교육청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규정이라 사료되며,
 -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학교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숲 조성이 충북의 숲 보존과 발전, 충북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 조례안은 학교숲의 교육적 · 환경적 · 사회적 의의와 중요성,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 관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학교숲을 활성화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사료됨.
- 그러나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숲 조성 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 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산림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